부 록

-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회칙
-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작성 규정
- 논문 투고 규정
- 연구 윤리 규정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회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한복신)의 신앙고백을 준수하여 복음주의적 구약신학을 정립하고, 구약학자들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학문적 발전을 이룩하 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 회는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Evangelical Society of Old Testament Theological Studies"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회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 내에 그 본부를 둔다.

제4조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정기적인 연구논문 발표 및 토론회
2. 학술지 발간
3. 타 학회 및 연구 기관과의 연대 사업
4. 공동 저서 발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2장 회 원

제5조 (정회원)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신앙고백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

출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
2. 본 회가 수집,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4.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회보 기고 및 수령
5. 본 회의 회칙 준수 및 회비의 납부
6. 기타 본 회의 제안 사업에 대한 참여

제7조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원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회계 1인
4. 서기 1인
5. 협동총무 1인

제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나 총회의 선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그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3.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라도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보며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나머지 임원은 회장,총무가 이를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조하며 본 회의 전반 업무를 관장한다.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 행한다.
4. 임원회는 본 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서기는 본 회의 모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회원에게 통보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7. 협동총무는 총무를 보조하여 본회 업무 진행을 돕는다.

제12조 (자문위원)
1. 본 회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추대된다.

제13조 (위원회)
1. 본 회는 필요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 해체된다.

제4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 개최한다.

제17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회원수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제18조 (총회의 소집) 회장은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1. 총회는 회원의 재적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다른 회원에게 위임된 수는 출석 회원으로 간주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성립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본 회의 회칙 개정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토의 안건

제5장 재 정

제2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으로 한다.
1. 회비는 연 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2. 연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3. 특별회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4. 필요에 따라 기부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2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일로부터 다음 해 정기 총회까지 로 한다.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는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전문학술지인 [구약논집]을 발행하여, 회원 상호간 학술적 교류를 증진시켜 학문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 회의 위원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본 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 및 5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본 회 회장과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3인 내외는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나.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회장은 본 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하고, 총무는 상임간사가 되어 실무를 담당한다.

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원과 같이 2년으로 한다.

제5조 (선정 및 절차)

가. 편집위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에서 구약학으로 정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해온 전임 교수로 한다.

나. 편집위원의 선정은 회원 중 최근 2년간 연구업적을 토대로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의)

가. 본 회는 위원장이 연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 소집 한다.

나. 본 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8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별도로 둔다.

가.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구약논집] 편집 및 출판

나. 게재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다. 기타 본 회 연구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

부 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2006년 11월 현재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성주진
   - 상임간사 : 강규성
   - 위원 : 김진섭 권혁승 전정진

논문 작성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에서 발행하는 『구약논집』투고 원고 작성 및 참고문헌 및 인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작성의 일반 원칙)

1) 원고 작성은 컴퓨터 문서작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양식을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용지는 A4로 하며 여백은 위쪽 35mm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30mm로 한다.
   - 글자 크기는 본문은 11 블록인용은 10 각주는 9포인트로 하며 줄 간격은 160%로 한다.

2) 원고 작성시 본문의 각 단원들의 제목 번호체계는 가급적 다음 체계를 따른다:
   예) I. 1. 1). (1) 혹은 1. 1.1 1.1.1

3) 원고 작성시 성경 장절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본문: 창세기 2:1-3; 다니엘 9:27; 이사야 4:23-5:6
   (2) 본문 괄호 안과 각주: (창 2:1-3); 단 9:27; 막 2:23-3:6

4) 본문에서 외국 인명 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본문안에서 외국인명은 첫 번째는 한글 표기 후 괄호에 외국어로 표기하며, 두 번째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예) 첫 번째: 영(E. J Young); 두 번째부터: 영
   (2) 각주에서 외국 인명 표기는 외국어로 하되, 첫 번째는 이름(약자)과 성을 모두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성만 표기한다:
   예) 첫 번째:E. J. Young; 두 번째부터: Young.

5) 원어 표기는 처음은 음역 후 괄호 안에 원어 표기하며 두 번째부터는 원어만 표기한다.

6) 각 약어들은 한글로 표기한다: 예, 예(e.g.), 등(etc.), 외(et al,) 참조(cf.) 절(v. vv.) 편(ed.)

7) 인용은 인용부호 겹따옴표("…")를 쓰고 인용부호안에 인용부호는 홑따옴표('…')를 사용한다.

제3조 (논문 각주)

논문작성시 각주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각주에 처음 참고문헌이 표기될 경우 문헌의 완전한 정보를 제시하고 동일 문헌이 두 번 이상 나올 경우 두 번째부터 약식 정보(저자명, 문헌명, 페이지)만을 표기하고 ibid, op.cit., 상게서, 전게서, 앞의 책이란 표기는 하지 않는다.
   예) 전정진,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205.; 전정진,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205.

2) 페이지 표기는 p. 혹은 pp. 혹은 '면' 이라는 표기 없이 아라비아 숫자만 표기하고 백 단위 이상은 백단위는 생략하고 십단위가 0인 경우는 백단위까지 표기한다 : 예) 35-36, 245-67, 303-307.

3) 국 저자명은 처음은 이름(약어)과 성을 모두 표기하고(예. B. K Waltke) 두 번째부터는 성(last name)만 표기한다(Waltke).

4) 공동 저자가 두 명일 경우 모두 표기하고(예: Tremper Longman III and David E. Garland) 세 명 이상은 처음 저자명만 기록하고 '외' 로 표기한다(예: David E. Garland 외).

5) 한글서적과 학술잡지 명은 겹꺽쇠(『…』)로 논문명은 겹따옴표("…")로 표기하고 로마자 책과 저널 명은 이텔릭체로 논문 명은 겹따옴표("…")로 표기한다.

6) 단행본은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순으로 표기

한다:
예,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구약 역사서의 문예적-신학적 서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36.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historical Book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39.

7) 시리즈물은 저자명, 『서명』(시리즈명 시리즈번호;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순으로 한다.
예, David W, Cotter, *Genesis*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vol 1;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3), 24.

8)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권수 (출판년도), 페이지 순으로 하고, 논문이 편집본에 게재되었을 경우 저자명, "논문명," 편집자명 편,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순으로 한다.
예: 기동연, "출애굽기 6:3의 재해석," 『구약논집』 제1집 (2005), 65.

9) 학위논문은 저자명, "논문명" (학위논문 종류, 출판지: 출판학교, 출판연도), 페이지순으로 한다.
예: 강규성, "야곱의 '톨레돗' 구조 속에 나타난 요셉과 유다의 역할" (박사 학위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2003), 45.

10) 번역서는 로마자 저자명, 번역서명, (원서 서명), 역자명 역,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순으로 한다.
예: J. H Sailhamer, 『구약신학개론:정경적 접근』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theology: A Canonical approach*), 김진섭 역, (서울: 솔로몬, 2003), 39.

11)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투레비안 양식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임원회 승인 즉시 발효된다.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의 학회지인 「구약논집」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논문투고자격)

「구약논집」의 투고는 회원 가능하다. 단, 회원이 아닌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고할 수 있다.

제 3 조 (논문투고양식)

「구약논집」에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갖추어 〈구약논집 논문 투고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 별지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된 논문제목과 성명과 소속이 기록되어야 한다.
2) 논문 – 성명과 소속이 기록되지 않은 논문작성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타 학술지 혹은 잡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3) 참고문헌목록 – 참고문헌목록은 논문에 언급된 것만 소개하며 그 양식은 논문작성양식에 따라야 한다.
4) 한글과 영문초록 – 한글과 영문초록은 A4 2/3정도의 분량으로 하되 논문 목적과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가 소개되어야 한다.
5) 검색어(Keywords) : 한글과 외국어 6~7개의 검색어를 작성해야 한다.

제 4조 (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A4 용지 14~15매로 하되 초록과 참고문헌목록을 포함하여 16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 5조 (작성과 교정의무)

1) 논문은 아래하한글 혹은 MS-Word로 작성하되 편집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히브리어 폰트는 가능한 바이블스의 폰트(Bwhebb) 혹은 SBL히브리어 폰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논문은 교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해야 한다.

제 7조 (제출방식)

논문 투고는 전자메일로 심사용 원고 1부를 편집 위원회로 발송하되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PDF파일로 만들어 발송한다.

제 8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투고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음주의구약신학회 연구자의 연구 윤리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연구부정범위)

연구자의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라 함은 연구 제안과 수행과 결과 보고 및 발표등에서 행해진 다음 행위를 말한다

1)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혹은 인용 없이 표절하는 행위
2) 연구 내용과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헌이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역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3) 동일한 논문을 두번 이상 게재하는 행위
4) 학계의 통상적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위원회가 자체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제2조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두어 필요한 행정업무를 관장

하게 한다.

제5조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여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는 제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 중에서 (4)-(6)의 의결은 재적 위원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 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랑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되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제보자 권리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12조 (조사, 심의 및 판정기간)

1) 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구성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징계판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 징계를 판정할 수 있다.

1) 경고
2) 논문 불인정
3) 일정기간 논문투고 금지
4) 제명
5) 일정기간 재가입불허
6) 해당기관장에게 통보

제14조(재심의)

재심의 요청은 판정 이후 3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5조(운영예산)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로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임원회 승인 후 즉시 발효된다.